

제 호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- 명 칭:
- 대표자:
- 소재지:
- 인력양성 분야:

「김치산업 진흥법」 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
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

직인